

한중일 FTA와 투자를 둘러싼 법적체계와 제약요소의 개선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Constraints on the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노재철*, 고준기**

호서대학교*,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동아대학교**

Jae-Chul Noh(noh-jc@hanmail.net)*, Zoon-ki Ko(kozk@naver.com)**

요약

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 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셰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 중심어 : | 自由貿易協定 | 對外直接投資 | 外國人投資(定) | 投資家對國家의紛爭解決 | 最惠國待遇 | 貿易에 關한 投資措施에 關한 協定 |

Abstract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s struggling for a new economic growth and facing new challenges and difficulties in foreign investment. In this paper, I Studied on the Legal System and Limits or Rules on the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First, FTA between Korea, Chin. The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and the investment flow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ere examin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three countries, it has been studied on the Legal System and Rules in the foreign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Based on this, and the following were examined. What are the major limits in the foreign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future, what should be included on the FTA investment chapter in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order to facilitate more investment?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ould be an effective mean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investment facilitation, and investment flow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ill be activated. In the future,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s expected to further promote invest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this regard, in the future, the FTA investment chapter in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include NT(National Treatment), MFN(Most-Favoured-Nation (Treatment)), Prohibi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pecific measures, the nationality requirements of management or the board of directors, movement of funds, safeguard measures,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compensation for los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investment promotion country(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other agreement between the three countries.

■ keyword : | FTA(Free Trade Agreement) | Foreign Direct Investment |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MFN(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TRIMS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

I. 서론

현재 한중일 간 FTA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세계자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각광을 받아 왔다[1]. 중국내 진출 한국기업은 약2만7천개이며 누적기준 2위, 기업수 기준 1위의 투자 대상국이다. 한EU,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중국의 對한 투자 증대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對한 투자가 증대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다[2].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적 요인과 중국내 임금상승과 정책변화 등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3]. 한중일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모델이 전환되면서[4]경제발전 모델은 수출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정책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3]. 현재 중국경제발전전환의 목적은 주로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및 자원절약, 환경보호 및 개선, 분배의 공정성,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3].

2013년 9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틀인 1단계 모델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양허 협상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한중은 1단계 협상에서 상품 분야를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나누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세분화해 개방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일반품목군은 즉시 또는 1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고, 일반민감품목군은 10년 이상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초민감품목군은 양허 제외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중협상에서 전체 품목수(1만2천개)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5].

최종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의 관세제도 역시 이번 협상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품 가운데 비교적 고관세인 9.5% 이상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 가운데 최종세의 비중이 48.8%에 달한다. 최종세는 대부분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생산할 뿐더러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도 직결돼

있다. 중국이 내수시장 성장에 맞춰 자국 소비재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산 수출품의 내국 민대우, 비관세 조치 철폐·완화,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SPS) 등과도 맞물려 있어 2단계 협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는 3국간의 경제협력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를 형성할 것이다[6]. 한중일 FTA로 역내 교역 비중을 확대하면 시너지효과가 커져, 한중일 FTA 타결시, NAFTA 18.0조불(25.8%), EU 17.6조불(25.2%)에 이어 한·중·일14.3조불(20.5%)로써 전 세계 3위의 지역통합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간 FTA는 한중일 모두에 거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 [7] win-win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2]. 역내 내수시장 창출은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외생변수에 취약한 동북아교역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對중 및 對일교역중 상당수 품목은 관세보다 비관세장벽등 기타교역 비용 비중이 높아, FTA 체결로 기타교역비용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對중·對일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6]. 한·중 FTA는 또한 관세철폐, 서비스나 투자 자유화 효과, 중국의 서비스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2].

다만 FTA 체결은 한중 투자협정, 한중일 투자협정(기타결) 등 기존의 양국 간 투자협정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의 보호문제, 투자 자유화 및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확대 효과 확보를 위해, 투자 자유화 의무를 가능한 상세히 규정하는 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2]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DRC), 일본의 종합 연구 개발기구(NIRA) 혹은 일본 무역 진흥기구(JETRO),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KIEP)에 의해 통해 중국, 일본 및 한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에 대한 한중일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주요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기술하였으며, 3국간 FTA 체결에서 투자효과를 확대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보호와 투자자유화 및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중일간의 FTA 체결에서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중일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의 개관

1. 한중일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FTA 추진상황

중국, 일본, 한국은 세계의 중요한 경제국이며[8]. 한중일은 세계의 주요 교역국이다[9].

표 1. 한중일의 경제적 위상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경제규모(GDP, 10억달러)	1,014(1.6%)	5,878(9.3%)	5,459(8.7%)	12,351(19.6%)
수출(10억달러)	442(2.9%)	1,580(10.5%)	772(5.1)	2,794(18.6%)
수입(10억달러)	415(2.8%)	1,394(9.0%)	694(4.5%)	2,503(6.1%)

출처: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중·일 FTA체결계획

2010년 한중일의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 및 유출액의 합계는 각각 세계 전체의 9.2%, 12.8%이다[10]. 한중일 간 교역 및 경제 관계를 보면 역내 교역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은 수출입 양면에서 일본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역내 교역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도 중국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은 같지만, 한국의 중요성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역내 교역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수출시장으로서의 역내 중요성이 더욱 줄어드는 추세이다[11].

표 2. 교역규모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전체 교역량	1조 809억불	1조6,732억불	3조6,421억불
	-수출:5,565억불	-수출:8,209억불	-수출:1조 8,986억불
	-수입:5,244억불	-수입:8,523억불	-수입: 1조 7,435억불
	-수지:321.4억불	-수지:-314억불	-수지: 1,551억불

출처: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중·일 FTA체결계획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견제하고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한중/한중일 FTA를 병행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은 2004.11월 이후 중단된 한일 FTA 협상재개를 강력 희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한중일 FTA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그동안 민감한 분야를 둘러싸고 지지부진했다. 한중일은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한중일 FTA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안보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순조로운 진전이 쉽지 않은 점도 있다[12]. 다만 선진국 발 글로벌위기 영향 심화 등으로 역내 교류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크게 형성되고 있다.

2009.10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 그간의 민간공동연구(2003~2009)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로 격상하여 2010~2011년간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1.12.16 제7차 평창 회의에서 공동연구를 공식 종료하였다. 2012.3월 보고서 문안의 검토작업(scrubbing)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완료·대외에 공개하였다. 최종보고서는 통상장관 및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2012.1.9 한중 정상회담(북경)에서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2012.5.2 한중 통상장관회담(북경)을 계기로 협상 개시 선언을 하고, 협상개시와 관련하여 양국 통상장관간 공동성명문을 대외에 발표하였다[6].

2012.5.13 3국정상회의(북경) 시 FTA 협상의 연내 출범선언을 위한 국내절차 및 실무협의를 포함한 준비작업을 즉시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 및 “FTA 체결 절차 규정” 따른 법정절차로 한중일 FTA 참여 여부를 결정하였다[6].

2. 한중일 간의 투자 흐름

한중일의 경제규모와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역내 투자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3. 한중일 간 투자

구분	한국	일본	중국
투자	대일투자:2.6억불 대중투자:48.7억불	대한투자:22.8억불 대중투자:72.5억불	대한투자:6.5억불 대일투자:3.1억불
3년간 투자 누계	대일투자:39.5억불 ('68-'10) 대중투자:448.5억불 ('68-'10)	대한투자:263.5억불 ('62-'11) 대중투자: 624.5억불 ('87-'10)	대한투자:31.5억불 ('62-'11) 대일투자:3.4억불 ('87-'10)

출처: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일본무역진흥회

2.1 중국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위 투자국(2006년)이다.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2]. 일본도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향하는 한편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직접투자 유입액과 비교하면 중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직접투자는 극히 적다. 특히 일본에 대한 투자는 적다[13].

표 4. 투자 및 교역규모

구분	한국	일본	중국
투자	해외투자:445억불 외국인투자:137억불	해외투자:572.2억불 외국인투자:-13.6억불	해외투자:688억불 외국인투자:1,160억불
GDP 대비 투자비중 ('10)	해외투자:13.8% 외국인투자:12.6%	해외투자:15.1% 외국인투자:3.9%	해외투자:5.1% 외국인투자:9.9%

출처: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중·일 FTA체결계획

중국이 해외 직접투자의 공급국임에도 불구하고[14] 일본과 한국은 모두 주요 투자 대상국은 아니다. 다만 역내 투자 보호와 자유화를 강화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경우 역내 해외 직접투자의 확대의 여지가 있다[13].

최근 중국에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는 외국 직접투자를 다시 아세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와 일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국과 아세안이 하나의 시장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면 거대한 중국 시장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어디에 투자해도 긍정적이라고 아세안 측은 보고 있다. 아세안의 전체로 볼 때에도 어느 나라든 기술 수준이 높고, 인프라도 정비되어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구미(歐

美) 등 다국적 기업의 동아시아를 위한 직접투자 전략은 'China +1'이어서, 먼저 중국에 투자 한 후 투자 위험 분산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중국 이외의 아세안 등 한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

2.2 일본

일본 정부는 일본에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16]. 2010년 일본의 대내 직접투자 총액은 12억 5,000만 달러이고, 대내 직접투자 스톡의 총액은 2,148억 달러이다[17]. 중국과 한국에서의 일본에의 직접투자는 아직 적다. 일본은 해외투자에도 적극적이다. 2010년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액은 흐름에서 563억 달러, 스톡에서 8,310 달러였다[17]. 일본의 소득수지는 6년 연속 무역수지를 상회하고 있어, 일본의 대외투자는 무역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3년 한일투자협정 발효이후 크게 증가해 왔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은 이미 중요한 대외 직접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의 중국과 한국에 해외 직접투자는 2010년의 일본 내의 대외 직접투자 총액 중 12.7% (대 중국), 1.9% (대 한국)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 근접성이나 무역관계를 감안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2.3 한국

2010년 한국에 외국 직접투자 유입액은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누적 투자액이 큰 주요 국가는 미국, 일본, 네델란드, 영국 및 독일 등의 순이다[18].

표 5. 한국의 업종별 對중국 투자(2011년)

(단위 : 억불, %)

업종	농·임·어·광업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출판·영상·방송·통신	금융·보험	숙박·음식점	여가·관련 서비스	부동산 임대
금액	0.03	37.5	0.6	3.2	0.4	0.3	1.3	0.1	0.02	1.0
비중	0.1	76.9	1.2	6.5	0.8	0.6	2.6	0.2	0.04	2.0

출처 : 수출입은행

반면 2010년 한국의 대외 직접투자는 331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의 투자처이다. 일본도 한

국의 중요한 투자대상이다.

III. 한중일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주요 계약 요소의 개선

1. 한중일간 외국투자를 둘러싼 애로사항과 법적 문제

각국내 외국인투자의 제약요소가 존재한다. 외국인의 회사소유권지분의 제한, 외환송금, 비자신청절차, 기술이전계약, 청산, 이행의무부과를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으로 예시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을 적절하게 제거함으로써 교역 및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 관련법·규정의 투명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보다 안정적이고 자유화된 투자환경의 조성은 지식 및 기술이전촉진 등의 혜택이 예상될 수 있다. 한중일FTA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금지,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요건부과금지(SMBD), 송금, 세이프가드, 수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공평대우 및 투자자 국가분쟁해결(ISD)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6]. 한중 FTA 투자분야는 기존 양국이 참여한 투자협정을 감안하여 투자장벽 해소의 방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2]. 즉, 한중일 사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장벽들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관세·비관세 장벽은 물론, 정부규제 및 유통관행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1].

2. 외국투자의 법적체계와 상대국의 투자에 관한 주요 제약

2.1 중국

2.1.1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법제

중국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들을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사 및 토지 관련법으로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담보법, 토지 관리법, 농촌토지도급법 등이 있다. 이 법들은 거래당사자의 계약관계 및 토지소유권 등을 규범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초창기 중국에 진출

한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불명확한 계약관계와 토지 소유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법들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3].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으로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이 법들은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중국내 외자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대다수는 임금인상, 노동계약,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3].

기업경영 관련법으로는 3자기업법, 기업소득세법, 반독점법, 돈세탁방지법, 기업파산법 등이 있다. 이 법들은 회사경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관련법으로는 위생검역법, 물오염방지법, 순환경제 촉진법 등이 있다. 현재 외자유치 및 기업경영에서 엄격한 환경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지적재산권관련법으로는 주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이 있다. 중국정부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침해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중국내에서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우세산업목록(中西部地域外國人投資優勢產業目錄)등을 정기적으로 제정·발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자세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국투자 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내용이다. 특히 2011년 1월에 국가가 선정한 전략적 신흥산업을 위해 투자가이드라인을 다시 보완하여 발표하였다[19].

중국경제발전전환시기의 외국인투자법제는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향후 상당기간 내수를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산업, 선진제조업, 친환경산업, 신 에너지산업,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낙후된 중서부 내륙지역의 발

진을 도모하고, 사회정의, 공정분배 및 민생현안을 반영하며, WTO 규범에 맞추고 국제화를 지향하는 등의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지난 30년간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법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왔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개선되어왔다. 중국의 대내 직접투자는 공동(合弁)기업, 합작기업, 독자(獨資)기업의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대내 직접투자 산업정책은 주로 외상(外商)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명시하고 있다. 이 목록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 기업의 투자사업은 권장류, 제한류, 금지류로 나뉜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허가류 투자사업으로 간주된다.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따라 목록의 수정을 통해 개방도 및 해외투자 활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외투자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외국기업의 투자사업은 각각 투자의 분류와 가액(價額)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심사절차 단순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공정한 세금부과의 확보, 공정한 경쟁의 촉진, 건전한 시장과 투자환경의 창출을 목표로 2010년 12월 1일에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에 과세 통일을 실현했다. 한편, 중국은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로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정책 및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중서부지역에서는 우선분야에 대한 외국투자 사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중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운영, 환경보호, 에너지·수자원의 절감 및 기술이전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한 기업 소득세는 감면될 수 있다. 일부 지방이나 지방정부도 외국투자 서비스 센터, 경제기술개발구와 보세구역을 설치하거나 외국기업에 대해 지방세, 연구개발 (R&D), 인적 자원, 토지이용 등에 관하여 더욱 편의와 우대를 함으로써 투자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13].

다만 지방정부의 불명확한 입법권한 및 범위 등은 중국 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동북3성과 특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특구지역으로의 투자가 활발하다. 이들 지방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지방성

법규 내용 및 상위법 위반 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 FTA 협정문에서 지방정부의 협정 준수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구속력 있는 문건(binding instruments)과 같이 중국의 입법체계를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내부 문건의 성격과 본질, 그리고 그에 대한 투명한 제정 절차 및 그 내용 공개의무 등에 대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22].

2.1.2 중국의 종전의 투자협정에서의 투자규칙의 검토

중국은 독립적인 투자 장(章)을 포함한 FTA를 ASEAN,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와 서명했다. 투자 장의 주요 조항은 보통 정의, 범위, 투자대우, 투자보호 및 촉진, 수용, 손실에 대한 보상, 이전, 대위(代位),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 및 체결국과 다른 체결국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FTA에는 ‘각 체결국은 다른 체결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있는 대우와 완전한 보호와 보장을 해주어야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 (NT) 및 최혜국 대우 (MFN)도 상호간에 부여하고 있다.

중싱가포르 FTA는 중ASEAN 투자 협정의 규정이 양국 간 FTA에 포함되는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과 싱가포르, 어느 체결국에도 관계없는 중ASEAN 투자 협정에 포함된 권리, 의무, 제한 및 예외는 중싱가포르 FTA에 적용할 수 없다. 중ASEAN 투자 협정과 중싱가포르 FTA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게 된 경우, 후자의 규정이 우선하게 된다.

중국은 투자장려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을 1988년에 일본과, 투자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을 1992년에 한국과의 사이에 각각 체결하였고, 2007년 9월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한중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한중BIT)에서는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 내국민대우 원칙 등을 도입하여 중국도 해외투자국으로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22]. 이 협정 하에서 투자보호는 주로 직접 수용과 간접 수용, 손해 및 손

실에 대한 보상, 자금의 이전, 투자자와 당사국 간의 분쟁해결, 투명성, 특정조치 이행 요구 등이 포함되어있다. 개정된 투자협정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투자보호를 위한 협정이자 투자 자유화에 대한 것은 아니다[23]. 한중 FTA 투자협상은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되 투자자유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투자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한중BIT에서처럼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22].

2.1.3 상대국에서의 투자에 관한 주요 제약

중국은 주로 외상(外商) 투자산업 지도목록(CIGF: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Catalogue for the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China])에서 구체적인 해외투자 규제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부류에 해당하는 해외투자사업은 제한되고 있다.

- 국내에서 충분히 발전한 사업 또는 외부에서 기술을 충분히 도입하고, 또한 이미 국내 수요를 충분히 충족 생산력의 획득이 예상되는 사업
- 아직도 국가에 의한 외국투자 도입을 위한 실험 단계인 사업
- 국가가 설립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
- 회귀하고 귀중한 천연 광상(鉱床) 조사 및 개발을 포함 하는 사업
-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르는 사업
-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 규칙으로 제한되는 사업.

다음 부류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 사업은 금지되어 있다.

-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사업,
-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천연 자원과 사람의 건강에 해를 미치는 사업, 농지를 크게 점유하고 환경 보호와 토지 자원의 발전에 있어 유해하거나 군사시설의 안전과 그 효과적인 이용을 위협하는 사업
- 생산에 중국 고유의 전통 공예기술과 중국 고유의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및 기타 국가의 법률과 행정 규칙으로 금지 된 사업.

한국과 중국 간의 투자협정은 독립된 투자협정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무역과 투자의 융합경향에 따라 FTA체결 시 투자협정을 그 일부로 포함시키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22].

중국은 WTO 가입 후 많은 법률과 법규를 폐지·제정·개정을 통하여 투자 관련 제도를 WTO협정에 준하

는 수준으로 정비하여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제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중국정부에 의한 조약자체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2.2 일본

2.2.1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법제

일본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대내 직접투자 일본의 법적 구조에 대하여 외환 및 외국무역법은 일본에의 대내 직접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OECD의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 원칙은 사후보고 방식이며, 반면 i) 국가안보, 공공질서 및 공공의 안전에 관련되는 경우 ii)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관련되는 경우 등 제한된 분야에서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위의 절차 외에 대내 직접투자에 대한 특정 분야의 규제는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법, 선박법, 광업법, 항공법,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전파법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 이후 지방산업 육진을 위한 지방정부 관계자가 외국 투자자와 접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세미나 및 일본 방문 프로그램 통해 공공 기관과 외국 투자자 사이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내 직접투자를 촉진해 왔다.

JETRO(日本貿易振興機構: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는 일본의 투자 촉진기관이며, 일본의 대내 직접투자를 지원해왔다. 즉, i) 외국 기업의 개별 사업 운영과 관련된 법령 정보 제공 ii) 일본의 주요 산업 지역의 6개 도시에 JETRO가 운영하는 대일 투자 비즈니스 지원 센터 (IBSC)를 두고 사무실 공간의 대여나 시장 조사, 정보수집 등의 신규 이민자의 초기 서비스 제공을 행하고 있다.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지역 본부 또는 연구개발시설의 창설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인센티브가 제안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0년에 ‘신성장 전략’을 채택했다. 이 전략은 고부가가치형 사업을 일본에 설립하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미래를 향한 일본의 투자 정책을 그리고 있다.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여 효

과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보다 폭 넓은 정책 대안을 외국기업에 제공 하는 계획이 향후 구체화 될 것이다 [12].

2.2.2 일본의 중진의 투자협정에서의 투자규칙의 검토

일본은 투자촉진과 함께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보호를 추구해 왔다. 최근 일본 EPA와 양자 투자협정의 대부분은 외국 투자의 자유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광범위한 실체적 및 절차적인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은 다음 규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 투자 재산 설립 후 및 설립 이전 양쪽의 단계에서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
- WTO의 무역에 관련한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TRIMs)을 상회하는 특정 조치 이행 요구의 금지
-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및 특정조치 이행요구의 금지에 관한 현상 유지의무 및 당사자간의 서로 맞물린(Ratchet) 의무가 부과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의한 유보
- 투자 관련 조치에 관한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투명성
- 자금 이전의 자유
- 국제 중재를 포함한 투자자의 국가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 (ISDS)
- 서비스 분야의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적용 범위

일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것에 더불어 공정·형평대우나 이른바 ‘우산조항(Umbrella Clause)’같은 다른 실체적인 약속도 투자 규칙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불가결하다[13].

2.2.3 상대국에서의 투자에 관한 주요 제약

외환 및 외국무역법은 원칙적으로 사후보고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반면, (i)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ii)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의 투자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의 신고 사유는 OECD의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관한 약관 제3조와 일치하고 있다. 후자의 신고사유는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동 규약 제2b조에 따른다. 외환 및 외국무역법은 후자의 분류를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석유산업, 가죽 및 가죽제품, 항공·해운, 통신 분야 등의 분야에 엄격히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환 및 외국무역법 아래에서 규정되고 있는 바와 같은 상황(국가의 안전위

협에 노출 등)에 빠진 경우, 재무장관 및 사업 소관장관은 관세·외환 등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내 직접투자의 변경 또는 중지를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다. 대외 직접투자에 대한 특정 분야의 제한은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법, 선박법, 광업법, 항공법,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전파법 과 방송법 등 법에 규정되어 있다[13].

2.3 한국

2.3.1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법제

1998년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을 맞이하면서 한국은 외국자본의 도입으로 위기에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제도를 자유화 해 왔다. 투자분야의 기초적인 법률규제의 완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이 1998년에 제정되었다. FIPA는 투자절차, 해외투자자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투자의 보호 및 자유화를 가져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절차는 외국투자의 통지, 투자 자본의 송금, 설립등기 및 상업등기 및 대내 직접투자 기업 등록을 포함한다. 외국인에 적용되는 절차는 외국투자통지와 대내 직접투자 기업등록의 두 단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인에 적용되는 절차와 같다. 그러나 민간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단계는 필요 없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정된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복합형과 단독형으로 나뉜다. 복합형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외자(外資)의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임대 또는 판매용으로 미리 지정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토지를 말한다. 실제로는 이들의 지역은 임대용이다. 반면 단독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 시기, 인센티브 등에 관한 투자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에 따라 외국 투자기업의 개별사업을 위해 지정되는 토지이다. 한국 정부는 2003년에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및 성공적인 설립을 지원할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인베스트 코리아 (IK)"라는 한국 국영투자촉진기관을 설립했다. 포괄적인 설립 후 서비스까지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IK는

외국기업이 한국에의 조속한 정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13].

2.3.2 한국의 종전의 투자협정에서의 투자규칙의 검토

한국은 지금까지의 FTA에서 투자 장 협상에서 한국의 목표는 FTA체결국 간 해외투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유치국(진출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하는 상용(商用) 관계자를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내국민 대우의무, 최혜국대우, 특정조치 이행요구의 금지, 경영진 및 이사회 의 국적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대우에 관한 최저 한도의 기준, 투자자 대 국가 분쟁 해결 등의 투자 협정의 핵심사항을 포함하여 질 높은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는 자유화 및 보호의 양쪽의 요소를 포함하여 독립한 장(章)을 가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한ASEAN·FTA 투자협정은 양 체결국에 동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유보표(留保表)에 대한 협상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다. 한EU·FTA는 유럽위원회에 투자 보호사항을 취급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호 관련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한EU·FTA는 투자의 법적 체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FTA 가운데서 한국은 한미 FTA (2007년 6월 서명)을 투자분야의 모델로 간주하고 있다. 한미 FTA의 투자 장은 3 섹션과 부속서로 구성되어있다. 섹션 A는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대우에 관한 최저기준, 수용과 보상, 자금의 이전, 특정조치의 이행 요구, 경영진 및 이사회 의 국적요구 사항 및 예외 규정 등 상대국 투자자의 권리와 유치국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섹션 B는 이러한 의무와 투자 협정을 위반한 경우의 ISDS(투자자 국가에 대한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규정하고 있다. 섹션 C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속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하거나 상기의 섹션을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관습법, 수용, 자금의 이전 등에 관한 부속서가 있다[13].

2.3.3 상대국에서의 투자에 관한 주요 제약

1998년 FIPA(외국인투자촉진법: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Korea])가 도입 된 이후 한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negative list system)에 따라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 해 왔다. 한국 정부는 매년 동법에 따라 외국 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분야의 표인 ‘외국인 투자 통합 공고’를 공표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투자에 관련한 국내법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서비스 분야는 외국 투자에 개방되어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의 총 1,145 분류 중 FIPA는 행정, 외부, 국방 등 62분류를 외국 투자에서 보호하고 있다(보호분류). 외국 사람은 나머지 1,083 분야 모두에 투자 할 수 있지만, 그 중 28 분야에 외국인 투자비율의 제한이 있다(제한분류)[13].

3. 투자자로부터 제기되는 문제

한중일은 대체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투자 자유화·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중일 투자자 입장에서 제약요소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회사의 외국인 출자비율, 외화 송금, 비자 신청 절차, 기술이전계약 및 회사청산에 대한 제한 및 로컬 콘텐츠,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특정조치의 이행요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환경은 그 진입단계에서부터 진행 및 철수단계까지 여러 법·제도적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치주의의 결여, 법제정 절차와 집행의 불투명성, 불안정한 국제조약 지위, 지방정부의 불명확한 입법권한 및 범위 등은 중국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22] 한중일은 각국이 자국영토 내에 외국투자 형태나 흐름의 방향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에 대한 현행 규제는 국가안보, 공공 및 투자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실행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한중일 투자협정의 주요내용과 의의

2012년 3국 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고, 공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3국 간 투자증진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협정은 투자의 내국민 대우 대상에 투자자 유효화를 위한 '설립 전 단계투자'는 포함하지 않고 '설립 후 단계투자'를 대상으로 했다. 기존 한일 투자협정보다는 낮지만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투자활동 보호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됐다. 협정문에서는 투자 유치 국가 법령 등 투자 관련제도의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강화했다. 또 기존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한일 투자협정의 효력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투자자가 양자협정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와 그 투자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20].

[표] 협정의 주요 조항

- 내국민 대우 부여 (제3조)
참가 후 투자활동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부여.
협정발효시점에 존재하는 부적합 조치(내외 차별적 조치는 대상 밖이지만, 적합성의 수준을 더욱 저하시키는 내외 차별적인) 개정은 할 수 없고, 대상 외로 제외되는 조치는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최혜국 대우부여 (제4조)
투자자가 단계 및 참가 후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그러나 투자의 허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체결국이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유보.
-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대우, 충분한 보호와 보장의 부여, 체결당사국에 의한 투자자와의 계약 준수 의무 (제5조)
- 특정조치 이행 요구의 금지 (제7조)
현지조달 요구, 수출입 균형 요구, 수출제한 등의 금지. 부당한 또는 차별적인 기술 이전 요구도 금지.
- 지적재산권의 보호 의무 (제9조)
- 투자에 관한 법제도의 공표 등의 투명성 확보 의무 (제10조)
- 투자 재산의 수용(收用) 조건과 그 경우의 보상 의무 (제11조)
- 송금의 자유를 확보하는 의무 (제13조)
- 체결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관한 투자자와 상대국과의 투자 분쟁 해결 절차 (제15조)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해준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자국기업과 비교해서 차별하지 않고 상호 외국에 부여하는 대우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다. 이 밖에 투자자와 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보

호의무를 강화하고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ISD; Investor-State Dispute)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그리고 공식협상이 시작된 지는 5년 만인 2012. 3월 타결돼 서명되었다. 한중간에는 투자협정이 1992년 체결 후 2007년 개정된 바 있고 중·일 간에는 이미 1988년에 체결됐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3국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중일 투자협정은 기존 한일협정보다는 낮지만 한중 협정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중일의 경제분야에서 첫 번째 법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며,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중일 간 관계 강화라는 정치적 의미도 가진다. 또한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을 근거로 한 규율의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각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실현하게 된다.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예견성을 개선하게 된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미미 일방적인 대우 및 투명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어 일본계 기업에 있어서 편리성이 제고된다[20].

5. 무역구제와 투자

현행 교역활동에서 무역구제규범이 경제효율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생산과정의 글로벌화로 인한 해외투자는 생산의 효율성 향상을 증진하고 교역국들의 경제복지를 최대화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 조치의 남용 등은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21]. UR 협상 종결 이후 우회방지 조치에 대한 검토는 WTO 반덤핑위원회에 위임되었으나 오늘날까지 어떤 결의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하나는 반덤핑 조치의 유효성 담보를 위해 우회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과 EU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회방지 조치가 국제 직접투자의 흐름을 방해하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일본을 비롯한 소위 “반덤핑 프렌즈그룹 (Friends of Antidumping Negotiations)”의 입장이 있다. 2005년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우회덤핑방지 조치가 “미해결 과제”라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단순하고 명백한 반덤핑 우회덤핑 상황에서는 우회덤핑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회덤핑방지 조치는 쉽게 남용될 수 있으며 남용되는 경우에는 신제품의 개발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거나 직접투자의 자연적인 흐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회덤핑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타협점을 이루지 못하자, 미국은 ① 최종조립을 제3국에서 하여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 ② 최종조립을 미국에서 함, ③ 소규모 상품 변형을 거쳐 미국에 수출, ④ 규제받고 있는 상품의 후속모델 수출 등과 같은 4가지 수단으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기존 명령의 확대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1994년 Uruguay Round Agreements Act에 포함시켰다. 1990년대에는 미국이나 제3국에서의 최종조립을 거당한 우회덤핑방지 소송이 줄어졌지만 최종조립 공정이 “경미하거나 무의미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대부분 패소판정을 받았다. 상당한 수준의 투자나 생산설비 활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그리고 제3국)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 또는 공정을 거쳐야 “우회”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관련법규나 입법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다국적 생산체제가 확산되고 국내산업 이해당사자들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미 조사당국이 우회기준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우회판정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한중일, 역내 무역 및 투자의 확대 외에도 3국 간 경제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한중일 FTA는 경제성장에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FTA는 3국 간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구축을 가져와 3국 간 포괄적 관계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에 한중일 FTA가 크게 기여하며, 3국 간 FTA는 현재 진행 중인 3국 경제협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경쟁·지식재산권·원산지·통관·무역구제 등 분야에서 공동규범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새로운 분업구조를 규정하는 한중일 FTA는 3국 간의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한중일 FTA는 3국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포괄적인 법제도적인 틀을 제공해서 3국간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중일 FTA는 각국의 잠재적 경제력을 감안하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역내 무역·투자를 촉진하여 한중일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무역·투자 장벽의 철폐로 인한 3국간 경제관계의 보완성에 의하여 보다 완전한 실현, 더 치열한 경쟁 등에 의해 거대한 시장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다양한 한중일간 경제 협력의 촉진에 의해 한중일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13]. 한중일 FTA협상과정에서 외국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접근 향상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동북아시아의 무역 및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 챕터에 투자보호를 위한 법령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효과적 분쟁해결 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최혜국대우, 내국민 대우, 최소대우기준,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 의 국적 요건, 송금, 수용 및 보상, 세이프가드 조치,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형평 대우, 투명성 등 투자협정상 주요의무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WTO/TRIMs 수준 이상의 의무내용을 반영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가능한 상세히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2].

일본과 한국은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보호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요소에 대한 투자재산 설립이전과 이후 단계에서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넓은 적용범위를 가진 투자자의 대(對)국가 분쟁 해결 절차, TRIMs(무역에 관한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수준을 상회하는 특정조치의 이행 요구의 금지, 서비스 장과 통일의 네거티브 목록 방식 및 기타 원활화 요소를 향후 한중일 FTA에 포함해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은 한중일 FTA 투

자 장(章)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 및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및 지방 정부가 채택·유지하는 조치도 포함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또한, 장래 한중일 FTA 투자 장(章)은 그 시점에서 3국 사이에 존재하는 2개국간 투자협정 (한중일 투자 협정을 포함한다)의 수준을 상회해야 한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적권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실체법상 진전이 있었으나, 행정부의 과도한 재량, 지방의 보호주의 등으로 집행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제도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중국의 무역관련 법령·제도의 공개 또는 사전공시 미비, 법령·제도 개정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등 투자제한적 요소의 개선 여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 對중국 투자에 있어 한국기업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어 절차적 권리를 반영토록 추진하여야 한다[2]. 한중 BIT가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에 투자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이 한국과 BIT를 체결한 후에 다른 OECD 국가들과 더 높은 수준의 BIT와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에 있는 다른 국가의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FTA상의 투자규정에서는 보호대상 투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보호수준 및 기준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혹은 한중일 FTA는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투자 기회에 관한 정보교환과 투자분야에 있어서 법령에 관한 정보공유를 포함한 역내 투자의 흐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투자 장(章)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투자 촉진·자유화는 오히려 각국의 특정수요, 경제적·법적 성숙 정도 및 각국의 개발 전략에 의거하고 있다. 투자 장(章)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자유화 과정의 적응과 수정에 관하여 중국에 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또한 투자 장의 대상과 범위는 가능한 협상방식을 포함한 협상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TRIMs 협정과 정합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對中 투자자 중국의 對韓투자보다 8배정도 많은 점을 감안

할 때 우리가 공세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법과 제도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ISD와 관련하여 한미FTA와 중-뉴질랜드 FTA ISD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투자자의 중국진출에 있어 중국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투자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을 감안할 때 한국이 협상 시 제기할 사항이 많으므로 투자협상 목표 수준별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당국의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여지에 대한 투명성 강화 개선을 위한 효과적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2] 한중 FTA의 투자분야 협상에서 중국 정부의 투자진입을 방해하는 조치와 해석을 제한하고, 각종 투자법제의 모호성을 개선하여, 중국내 우리나라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金洪飛, 萬蘭蘭, 張羽, “國際金融危機對中國出口貿易的影響”, 國際金融研究, p.58, 2011(9).
- [2]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중 FTA 추진 계획 (통상절차법 제6조를 준용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자료), p.1, 2012(4).
- [3] 金成華, “중국경제발전전환시기의 외국인투자법제”-12.5시기 상해시 외자유치현황과 과제, 「한국과 중국의 최근 법제 동향」,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상해대학법학원·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p.12, 2012(12).
- [4] 溫.大安, “轉變經濟發展方式的重要意義”, 求實, 2011年S1期, 182面. 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 國發, 32號, 2012.
- [5] 연합뉴스, 2013년9월6일자.
- [6]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중·일 FTA체결계획(통상절차법 제6조를 준용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자료), p.1, 2012(11).
- [7] 김영귀,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외교

통상부·한국무역협회, 한·중·일 FTA공청회자료, pp.14-18, 2012.10.

-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1.
- [9] WTO Statistics Databasetime series, 2011.
- [10]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 [11] 김도훈, “한중일 FTA와 제조업 분야 효과”, 외교통상부·한국무역협회, 한·중·일 FTA공청회자료, pp.20-21, 2012(10).
- [12] 김성철, “한중일 FTA의 외교안보정책”, 외교통상부·한국무역협회, 한·중·일 FTA공청회자료, p.8, 2012(10).
- [13] 日中韓 FTA産官學共同研究報告書, pp.84-85, 2011(12).
- [14] The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 [15] 佐藤 正之, “東アジアにおける域内統合の動きと中國-中國·ASEAN間のFTA”, 財務總合政策研究所, 2011.
- [16] JETRO, 日本の國·地域別總投資流入(國際投資狀況), 2011.
- [1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ANNEX-ES pp.187-191, 2011.
- [18] Korea EXIM Bank,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 Korea, 2011.
- [19]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2011年改訂版.
- [20] 外務省經濟局, 日中韓投資協定の概要, 2012.4.
- [21] 무역위원회 무역투자연구원,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p.49, 2007(7).
- [22] 유예리, “한중 FTA투자협정의 주요쟁점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1호, pp.119-153, 2012(3).
- [23] 한중BIT 제2조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저 자 소 개

노 재 철(Jae-Chul Noh)

정회원



- 1989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2010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보장법, 노동법, 정당관계법

고 준 기(Zoon-Ki Ko)

정회원



- 1976년 ~ 1983년 : 군산교육대학/전주대학교 법정대학(법학사)
- 1985년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1991년 2월 : 한양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관심분야> : 경제통상관계법, 사회보장법, 노동법